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3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20년 제 5530 호

# 인 증 서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의사록

일시 : 2020년 8월 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7층 본점 대회의실

상법 제390조 제4항 및 정관 제34조에 따라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 |                  |                   |
|------------------|-------------------|
| • 법인이사 총 수 : 1 명 | • 출석 법인이사 수 : 1 명 |
| • 감독이사 총 수 : 2 명 | • 출석 감독이사 수 : 2 명 |

의장인 법인이사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의장”)은 직무수행자로 현나영을 지정하고, 지정자인 현나영은 이를 수락하여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다.

제1호 의안 : 신주발행의 건(제2종 종류주식)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에 의하여 신주식(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출석한 이사들에게 그 가부를 물은바, 출석한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승인 가결하다.

- 신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제2종 종류주식 240,000주
- 신주식의 액면 가액: 1주 금 5,000원
- 신주식의 발행 가액: 1주 금 16,667원
- 신주식의 청약기일 : 2020년 8월 11일
- 납입기일: 2020년 8월 12일
- 납입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우리은행 여의도한화금융센터
- 신주식의 인수방법: 정관 제12조3항에 의거 제3자배정방식. 기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함.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13시 0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20년 8월 7일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이사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인)

감독이사 소병운

감독이사 김상부



## [별지]

### I. 정관의 주요 기재사항

#### 1. 상호



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A.I.M. Cross-border Value Investment 1 REIT Co., Ltd.”라 한다.

#### 2. 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그 자산을 부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및 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1) 부동산
- 2) 부동산개발사업
-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 5) 증권, 채권
-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 3.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육백만(16,000,000) 주로 한다.

#### 4. 1주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1주의 액면금액은 오천 원(₩5,000)으로 한다.

#### 5.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육만(60,000)주로 한다.

## 6. 주식의 수와 종류

-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인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3) 회사는 [6,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종류주식을, [4,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7. 주식의 내용

- 1)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은 각각 이익배당 시 제2항에 기재된 순서 및 내용으로 이익배당을 받고, 잔여재산의 분배 시 제3항에 기재된 순서 및 내용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의결권부 종류주식으로 한다.
- 2) 회사는 해산 결의 직전 결산기까지 매 결산기에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을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배당한다.

단, 본항과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1주의 발행가액'이라 함은 각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출자금(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다)을 회사가 그 투자 대상인 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 발행 보통주식의 취득을 위해 미국달러(USD)로 환전한 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미국달러(USD) 금액을 말한다.

- ① 회사는 각 주식에 대하여 미국달러(USD)로 이익을 배당한다.
- ②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 가.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제1종 종류주식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의 연 8.5%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위 보유기간을 대신하여 회사가 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 발행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당해 결산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 나.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결산기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배당시에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1종 종류주식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 ③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 가. 회사는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제2종 종류주식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의 연 8.5%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제2호 가목 단서가 적용된다.
- 나.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결산기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배당시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다.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2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제3호 가목)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2종 종류주식을 참가시켜 초과분의 25%를 제2종 종류주식에, 초과분의 나머지 75%를 보통주식에 각각 배당한다.

####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

제2호 가, 나목 및 제3호 가, 나목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3) 회사가 청산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미국달러(USD)로 분배한다.

- ①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조 제2항 2호 나목에 따른 제1종 종류주식의 누적 미배당분 상당액을 분배한다.
- ②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 ③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조 제2항 3호 나목에 따른 제2종 종류주식의 누적 미배당분 상당액을 분배한다.
- ④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 ⑤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 ⑥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20%는 제1종 종류주식에, 33%는 제2종 종류주식에 안분하여 각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는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한다.
-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8. 신주의 배당기준일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9.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1)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①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③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하여 회사의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계약 등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함.
- ④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
- ⑤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⑥ 제51조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⑦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⑨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거래
- ⑩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① 회사의 정관 변경
- ② 상법 제417조에 따른 액면가 미만으로 주식 발행
- ③ 회사의 자본감소(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함)
- ④ 존립기간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회사의 해산
- ⑤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⑦ 회사의 영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 ⑧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의 전부의 양수
- ⑨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⑩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⑪ 법인이사 또는 감독이사의 해임
- ⑫ 부동산 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대상· 범위 등 부투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⑬ 부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⑭ 충·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 ⑮ 제45조 제2항 제2호(단,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1항의 결의에 의함), 제3호 및 동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 ⑯ 기타 「상법」 및 부투법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3)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

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제2항 제12호 내지 제14호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 10.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 ① 부동산
- ② 부동산개발사업
- ③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④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 ⑤ 증권, 채권
- ⑥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 2)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 ①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 ②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 ③ 부투법이 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 11.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 1)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2)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 4)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

## 12.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제28조 제3항 및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고,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 13. 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본점 외의 지점,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최초 본점장소는 발기인총회에서 정한다.

## 14.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한다.

## 15.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부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1인 및 감사이사 2인 이상을 둔다.
- 2) 회사는 부투법 제22조의2에 따라 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투자운용을 법의이사로 선임한다.
- 3)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부투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이사는 부투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동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 16. 업무의 위탁

- 1) 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자산의 보관업무,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를 관련 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회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수탁회사 중 자산관리회사는 부투법상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은 자, 판매회사는 부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무수탁회사는 부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 2) 회사가 각 수탁회사와 체결할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식판매 위탁계약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자산관리위탁계약
    - 가. 자산관리회사가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 나. 자산의 투자·운용 규모 및 대상 등 제반 운용조건에 관한 내용.
    - 다. 업무수행시 자산관리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라. 회사의 자산처분과 관련된 업무.
    - 마. 법령에 의한 회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 업무.

- 바. 계약기간.
- 사.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아. 자산관리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
- 자.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자산보관계약

- 가. 자산보관기관이 위탁을 받아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 나. 자산의 보관 대상 등 제반 보관방법에 관한 내용.
- 다. 업무수행시 자산보관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라. 계약기간.
- 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바.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
- 사.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



#### ③ 일반사무수탁계약

- 가. 사무수탁회사가 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회사 자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회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 및 공시 업무, 기타 위탁 받은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 나. 업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내용.
- 다. 업무수행시 사무수탁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라. 계약기간.
- 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바. 사무수탁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
-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주식판매 위탁계약

- 가. 주식의 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 나. 업무수행시 판매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 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판매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II.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 1.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일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3) 합병
- 4) 파산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III.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우리은행 여의도한화금융센터



#### IV. 기타 중요한 사항

- 1) 당해 회사는 국내에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US-REIT의 보통주식 100%를 취득하고, US-REIT(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는 US-LLC(CHALLENGER AIM C1, LLC)의 보통주식 100%를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US-LLC가 85 Challenger Road Ridgefield Park, New Jersey, USA 소재 토지 및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당해 회사는 대상 부동산을 매입한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시장 공개매각을 통해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 3) 당해 회사의 투자금 모집 기준 금액은 원화이나, 투자 대상 자산 및 분배금 지급은 미화(USD) 기준이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해지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원화 기준의 수익률 하락 및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5) 주주인 투자자가 본 신주청약서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귀사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 6) 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식 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끝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7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20년 제 5530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의

2020년 08월 07일자 이사회 -----

의사록에 기재된 법인이사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감독이사 소병운, 동 김상부 -----

등의 대리인 최현석은 -----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 입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2020년 08월 14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아 래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위임장 -----